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8월 24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31.) 상정 ·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4.) 상정 ·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 축조심사 · 의

결(수정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설립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청 및 검사의 기능,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에 맞추어, 종전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제명이나 조항 등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 제명 등을 변경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입법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임.

다만, 상설 특별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권한 및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의 보완,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시에도 관련 법률의 ‘보조인 제도’가 적용되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도 등에도 적용되도록 추가 검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추가 검토 및 보완으로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게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은 별도의 개정안(위원회안)으로 정비하는 것이 법제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의겸)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찰청’ 정비 대상 용어를 그 의미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28개 법률의 개정부분은 삭제하여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법률에 따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대한 적용례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보완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찰청’ 정비 대상 용어를 그 의미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28개 법률의 개정부분은 삭제하여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군사법원법」의 재정신청 관할 변경에 따라 기존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사항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신청 관할을 수정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대한 적용례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보완함.

8. 심사결과

수정의결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찰청’ 정비 대상 용어를 그 의미에 맞게 수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가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적용되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법률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보완함.

수정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용어 명확화(안 부칙 제15조제2항 등)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정비 대상 법률에서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아닌 공소권자인 “검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함.
-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등 정비 대상 법률에서 “공소청”이 의미하는 기관의 범위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명확히 함.

나.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개정부분 삭제

실체적 내용의 보완으로 부칙을 통하여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부분을 삭제하여 별도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다. 「군사법원법」의 재정신청 관할 변경 사항 반영(안 부칙 제15조제1항)

「군사법원법」의 재정신청 관할 변경에 따라 기존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사항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신청 관할을 수정함.

라. 수사권 삭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16조)

- 1)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2) 검사의 수사 근거를 삭제하는 「선원법」 등 4개 법률과 관련하여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5조의12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61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제19항·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26항부터
제9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같은 조 제
4항을 제6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제14
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제16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항으로, 같
은 조 제9항을 제20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26항으로, 같은 조 제
11항을 제27항으로, 같은 조 제12항을 제28항으로, 같은 조 제13항을
제29항으로, 같은 조 제14항을 제36항으로, 같은 조 제15항을 제40항
으로, 같은 조 제16항을 제42항으로, 같은 조 제17항을 제45항으로, 같
은 조 제18항을 제47항으로, 같은 조 제19항을 제49항으로, 같은 조
제20항을 제51항으로, 같은 조 제21항을 제54항으로, 같은 조 제22항
을 제55항으로, 같은 조 제23항을 제58항으로, 같은 조 제24항을 제59
항으로, 같은 조 제25항을 제60항으로 한다.

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및 제30항부터 제35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6항(종전의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제41항, 제43항, 제44항 및 제4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7항(종전의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9항(종전의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1항(종전의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2항, 제53항, 제56항 및 제5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0항(종전의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

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⑰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⑱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②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③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수사 자료”를 “조사·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②4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②5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③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중대범죄수사청차장·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㉓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㉔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항

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㉔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

판·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㉔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를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㉓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④③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④④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④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④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⑧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④⑨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

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 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수사·공판 과정”을 “수사·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4. 부칙 제15조제52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

1. ----- 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61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제19항·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 3. (개정안과 같음)

<삭제>

	<u>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2027년 4월 22일</u>	
<u><신 설></u>	<u><신 설></u>	<u>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u>
<u><신 설></u>	<u>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u>	<u>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u>
<u><신 설></u>	<u>6. 부칙 제15조제66항: 2027년 5월 27</u>	<u><삭 제></u>

일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196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u><신 설></u> ② · ③ (생 략) 제15조(다른 법률의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 음) 제15조(다른 법률의	<u>공소청법 부칙 제 6조제2항에서 규 정한 종전의 「검 찰청법」 제4조제 1항제1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에 따 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u> <u>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법」에 따라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하였던 「공소청 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 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 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 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제15조(다른 법률의
---	---	--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개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② (생략)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② (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를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u>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 는”으로 한다.</u> <u>제53조의3제1항 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u>
<u>⑤</u> (생략)	<u>⑤</u> (현행과 같음)	<u>⑨</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생략)	<u>⑥</u> (현행과 같음)	<u>⑭</u> (현행 제6항과 같음)
<u>⑦</u> (생략)	<u>⑦</u> (현행과 같음)	<u>⑮</u> (현행 제7항과 같음)
<u>⑧</u> (생략)	<u>⑧</u> (현행과 같음)	<u>⑰</u> (현행 제8항과 같음)
<u>⑨</u> (생략)	<u>⑨</u> (현행과 같음)	<u>⑳</u> (현행 제9항과 같음)
<u>⑩</u> (생략)	<u>⑩</u> (현행과 같음)	<u>㉑</u> (현행 제10항과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같은)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⑳ (현행 제11항과 같음)
⑬ (생략)	⑬ (현행과 같음)	㉑ (현행 제12항과 같음)
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광역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⑭ (현행과 같음)	㉒ (현행 제13항과 같음) ㉓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

		<u>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로 한다.
<u>⑮ (생략)</u>	<u>⑮ (현행과 같음)</u>	<u>④⑩ (현행 제15항과 같음)</u>
<u>⑯ (생략)</u>	<u>⑯ (현행과 같음)</u>	<u>④② (현행 제16항과 같음)</u>
<u>⑰ (생략)</u>	<u>⑰ (현행과 같음)</u>	<u>④⑤ (현행 제17항과 같음)</u>
<u>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 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u>	<u>⑱ (현행과 같음)</u>	<u>④⑦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 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u>

⑬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 (현행과 같음)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 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⑳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 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⑳ (현행과 같음)

제63조의7제2항 전 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 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 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u>한다.</u>		<u>한다.</u>
		<u>제34조의2 각 호 외</u> <u>의 부분 중 “때에</u> <u>는”을 “때[공소청</u> <u>(광역공소청, 지방</u> <u>공소청 및 지방공소</u> <u>청 지청을 포함한</u> <u>다)의 경우에는 공</u> <u>소제기 여부를 결정</u> <u>한 때를 말한다]에</u> <u>는”으로 하고, 같은</u> <u>조 제2호 중 “검찰</u> <u>· 경찰”을 “공소청</u> <u>과 중대범죄수사청</u> <u>· 경찰”로 한다.</u>
<u>㉑ (생략)</u>	<u>㉑ (현행과 같음)</u>	<54> (현행 제21항 과 같음)
<u>㉒ (생략)</u>	<u>㉒ (현행과 같음)</u>	<55> (현행 제22항 과 같음)
<u>㉓ (생략)</u>	<u>㉓ (현행과 같음)</u>	<58> (현행 제23항 과 같음)
<u>㉔ (생략)</u>	<u>㉔ (현행과 같음)</u>	<59> (현행 제24항 과 같음)
<u>㉕ 형사사법절차에</u> <u>서의 전자문서 이용</u> <u>등에 관한 법률 일</u>	<u>㉕ (현행과 같음)</u>	<60> <u>형사사법절차</u> <u>에서의 전자문서 이</u> <u>용 등에 관한 법률</u>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 제2호”로 한다.

<신 설>

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 제2호”로 한다.

㉕ (개정안 제26항과 같음)

<신 설>

<신 설>

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㉕ 정보통신망 이용

㉕ (개정안 제27항과 같음)

<삭 제>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으로 한다.

<신 설>

㉨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신 설>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㉔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㉔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신 설>

말 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신 설>

<신 설>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 때”를 “중인
때(공소청의 경우에
는 해당 사건이 송
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 때를 말한다)”로
한다.

③②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
소 청 (광 역 공 소 청 ,
지방공소청 및 지방
공소청 지청을 포함
한다)과 중대범죄수
사청·경찰”로 한
다.

③③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검
사(군검사를 포함한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까지를 말
한다)인”으로 한다.

②② (개정안 제32항과
같음)

<삭 제>

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
사법경찰관을 포함
한다)”을 “검사(군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
검사의 지휘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을 포
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검
사의 수사 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
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
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
은 항 단서를 삭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
사장”을 “지방공소
청장”으로, “감찰하

<신 설>

게”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
하는”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중 “피
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
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
야 한다”로 한다.

③4 군사법원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
방공소청”으로 한
다.

제122조의 제목
“(검사장에 대한 수
사 등 촉탁)”을 “(공
소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의 촉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삭 제>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 와”을 “광역공소청 장 또는 지방공소청 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로 한다.

제178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 청”을 각각 “중대범 죄수사청”으로 한 다.

제286조 전단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의 검사, 중 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 사청수사관”으로 한 다.

제473조제1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신 설>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㉔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

㉔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신 설>

<신 설>

㉞ 군인연금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공소청의 경우
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 경우를 말한다)
이거나”로 한다.

㉟ 방위사업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를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
로, “조사·수사 자
료”를 “조사·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나 공소 유지와 관
련된 자료를 포함한
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
원”을 “감사원, 공소
청”으로 한다.

㊴ 군인연금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
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㊵ 방위사업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신 설>

정한다.

제6조 제7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
소청, 지방공소
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수사기
관에 의하여 수
사가 진행 중(공
소청의 경우에
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인 경
우를 말한다)인
사항

㉔ 병역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
청(광역공소청, 지
방공소청 및 지방공
소청 지청을 포함한

정한다.

제6조 제7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
소청, 지방공소
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
(공소청의 경우
에는 해당 사건
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기 전
까지를 말한다)
인 사항

㉕ 병역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
청(광역공소청, 지
방공소청 및 지방공
소청 지청을 포함한

<신 설>

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
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 는”으로
한다.

제61조 제3항 제3호
중 “중인”을 “중(공
소청의 경우에는 해
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
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
청 또는 수사기관”
으로 한다.

㉔ 자동차관리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2항 제2
호 본문 중 “수사기
관”을 “공소청(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 이하

다. 이하 같다)과 수
사기관”으로, “때에
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 는”으로
한다.

제61조 제3항 제3호
중 “중인”을 “중(공
소청의 경우에는 해
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
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㉕ (개정안 제39항
과 같음)

	<u>이 호에서 같다) 또</u> <u>는 수사기관”으로</u> <u>하고, 같은 호 단서</u> <u>중 “수사기관”을</u> <u>“공소청 또는 수사</u> <u>기관”으로 한다.</u> <u>제85조제4항 중 “검</u> <u>사, 사법경찰관리”</u> <u>를 “사법경찰관리”</u> <u>로 한다.</u> <u>제88조제2항 각 호</u> <u>외의 부분 중 “지방</u> <u>검찰청 또는 지방검</u> <u>찰청지청”을 “지방</u> <u>공소청 또는 지방공</u> <u>소청 지청”으로 한</u> <u>다.</u>	
<u><신 설></u>	<u>④① 근로기준법 일부</u> <u>를 다음과 같이 개</u> <u>정한다.</u> <u>제105조 본문 중</u> <u>“검사와 근로감독</u> <u>관”을 “근로감독관</u> <u>으로 한다.</u>	<u>㉔ (개정안 제40항과</u> <u>같음)</u>
<u><신 설></u>	<u>④① 선원법 일부를 다</u> <u>음과 같이 개정 한</u>	<u>㉕ (개정안 제41항과</u> <u>같음)</u>

<신 설>

<신 설>

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
事)와 선원근로감독
관”을 “선원근로감
독관”으로 한다.

④② 수산생물질병 관
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수
사는 검사와”를 “수
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
찰청지청”을 “지방
공소청 또는 지방공
소청 지청”으로 한
다.

④③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거목부
터 더목까지를 각각

④③ (개정안 제42항과
같음)

<삭 제>

너목부터 러목까지
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대범죄수

사청장 및 3

급 이상 중

대 범죄 수사

청수사관

제3조제1항제2호 중
“하목”을 “하목, 거
목”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검찰청법」 제4
조”를 “「공소청
법」 제4조”로 한
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중
대 범죄 수사청으로
부터 중대범죄수사
청수사관”으로 한
다.

제17조제4항 중 “대
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청, 경찰청”으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
울중앙지방검찰청”
을 “서울중앙지방공
소청”으로 한다.

제27조 중 “대검찰
청”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으로 한
다.

제28조제1항 및 제2
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서
울고등법원”을 “지
방법원 본원 합의
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서
울고등법원”을 “지
방법원 본원 합의
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
소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

<신 설>

사원과 검찰·경찰
을 “감사원,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한
다)과 중대범죄수사
청·경찰”로 한다.

제47조 중 “「검찰
청법」(다만, 제4조
제1항제2호·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을 “「공소청법」
(제4조제5호 및 제6
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로 한다.

④ 가족관계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수사기관이”를
“공소청(광역공소
청, 지방공소청 및

④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신 설>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또는 수사기관의”로 한다.

④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신 설>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④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③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

<신 설>

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
소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
항 중 “「형사소송
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
송법」 제327조제8
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
을 “공소청”으로 한
다.

④7 범죄피해자 보호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
항 중 “지방검찰청”
을 각각 “지방공소
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
사 중인 형사사건”

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
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
공소청 지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
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
항 중 “「형사소송
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
송법」 제327조제8
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
을 “공소청”으로 한
다.

③3 (개정안 제47항과
같음)

<신 설>

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④⑧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

③④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

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
방공소청장”으로 한
다.

제29조의2 각 호 외
의 부분 중 “법원”
을 “법원, 공소청”으
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
원”을 “공소청, 군사
법원”으로, “경찰관
서”를 “중대범죄수
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
조제1항”을 “「공소
청법」 제3조제1항”
으로, “대검찰청, 고
등검찰청, 지방검찰
청, 지방검찰청 지
청”을 “공소청, 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
방공소청장”으로 한
다.

제29조의2 각 호 외
의 부분 중 “법원”
을 “법원, 공소청”으
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
무”를 “공소·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
원”을 “공소청, 군사
법원”으로, “경찰관
서”를 “중대범죄수
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
조제1항”을 “「공소
청법」 제3조제1항”
으로, “대검찰청, 고
등검찰청, 지방검찰
청, 지방검찰청 지
청”을 “공소청, 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

<신 설>

으로 한다.

제109조 제1호 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
기관”으로, “수사 사
건”을 “사건”으로
한다.

④9 불법정치자금 등
의 몰수에 관한 특
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
찰청”을 “공소청(광
역공소청, 지방공소
청 및 지방공소청

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
을 “지방공소청장”
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
을 “지방공소청장”
으로 한다.

제109조 제1호 다목
부터 마목까지를 각
각 라목부터 바목까
지로 하고, 같은 호
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
사사건

③7 불법정치자금 등
의 몰수에 관한 특
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
찰청”을 “공소청(광
역공소청, 지방공소
청 및 지방공소청

<신 설>

지청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
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
항 중 “「형사소송
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
송법」 제327조제8
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
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
항 중 “「형사소송
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
송법」 제327조제8
호”로 한다.

㉞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다.

제23조제3항 및 같
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
항 중 “「형사소송
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
송법」 제327조제8
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
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
항 중 “「형사소송
법」 제327조제2호”
를 각각 “「형사소
송법」 제327조제8
호”로 한다.

<삭 제>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을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할”로 한다.

<신 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삭 제>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하는”을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를 조사할”을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할”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

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
사”를 “사실관계 확
인, 면담 또는 조사”
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19세미만피
해자들을 조사”를
“19세미만피해자들
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
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진
술조력인의 수사과
정 참여)”를 “(진술
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조사과정”을 “사실
관계 확인, 면담 또
는 조사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를 조사”
를 “피해자에 대하
여 사실관계 확인,

<신 설>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을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⑤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

<삭 제>

<신 설>

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수사하거나 결정”을 “처리·결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검

<삭 제>

<신 설>

<신 설>

찰청”을 “공소청”으
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검
찰청”을 “공소청”으
로 한다.

㉔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
청(광역공소청, 지
방공소청 및 지방공
소청 지청을 포함한
다) 또는 수사기관”
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

㉕ 출입국관리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
단 및 같은 조 제5
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

<삭 제>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
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항제1호 중

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
사 장 (檢 事 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수사진행”을 “수사
진행(공소제기의 결
정을 포함한다)”으
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2
호 본문 중 “범죄수
사”를 “범죄수사(공
소제기의 결정을 포
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
단 및 같은 조 제5
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
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
사 장 (檢 事 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신 설>

㉞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

<신 설>

㉟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 경찰청”
을 각각 “공소청, 중
대범죄수사청, 경찰
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
찰청법」(제4조제2
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
방검찰청”을 “지방
공소청”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신 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
사장”을 “지방중대
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으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
등검사장”을 “광역
공소청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
방공소청장”으로 한
다.

⑤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
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
사”로 한다.

⑤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삭 제>

<57> 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수사”를 “수사 또는 처리·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중대범죄수사청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공판 과정”을 “수사·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

<신 설>

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⑥ 형사사법절차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
200조의4”를 “제200
조의4, 제220조의2,
제 245조 의 12”로,
“제294조의4”를 “제
294조의4, 제294조
의5”로 한다.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
사관”으로, “검찰청”
을 “공소청, 중대범
죄수사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
방검찰청”을 “지방
공소청”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㉑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검
사의 수사지휘 등)”
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
를 받아야 하며 검
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조언
을 요청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지
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
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로, “감찰
하는”을 “점검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삭 제>

<신 설>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②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신 설>

⑥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노인을 조사하

<삭 제>

<삭 제>

<신 설>

는”을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

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발달장애인을 조사”를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

<삭 제>

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
검사, 전담수사관
으로, “수사방법”을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검찰총
장”을 “검찰총장, 중
대범죄수사청장”으
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
사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
지”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
청장은 각 지방중
대범죄수사청장
으로 하여금 발달
장애인 전담 수사
관(이하 이 조에
서 “전담수사관”
이라 한다)을 지

정하도록 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
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㉞ 아동복지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삭 제>

제21조제3항 중 “수
사기관이 피해아동
을 조사하는”을 “검
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
담 또는 조사하는”
으로 한다.

<신 설>

㉞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 제>

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
사장”을 “지방공소

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신 설>

<신 설>

한다.

㉞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

㉟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중대범죄수사청차장·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

<삭 제>

㉟ (개정안 제68항과 같음)

호 중 “검찰, 경찰”
을 “공소청(광역공
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과 중
대범죄수사청, 경
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
우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
한다)제공”으로 한
다.

<신 설>

㉞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
다.

<삭 제>

제38조의4제2항제2
호 중 “수사를”을
“수사 또는 사실관
계 확인을”로, “수사
기관의 장이”를 “수
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로 한다.

<신 설>

㉟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삭 제>

<신 설>

<신 설>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
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
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㉑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3항 제1
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
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수사
기관”으로 한다.

㉒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㉑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3항 제1
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
으로 한다.

제11조 제4호 중 “수
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
관의 「형사소송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이나 면담 또는 조
사”로 한다.

<삭 제>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을 “검사는 아
동·청소년대상 성
범죄 사건”으로 한
다.

제25조제1항 중 “수
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법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수사기
관과 법원”을 각각
“수사기관, 공소청,
법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
사”를 “사실관계 확
인, 면담 또는 조사”

<신 설>

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성범죄를 수사하는”을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㉓ 여성폭력방지기
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
사기관”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한
다) 및 수사기관”으
로 한다.

㉔ 여성폭력방지기
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
사기관”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

<신 설>

⑦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제1항 중 “수
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법
원”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
담,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
하거나”를 “수사기
관, 공소청 및 법원
은 범죄피해자에 대
하여 사실관계 확

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
관”으로 한다.

<삭 제>

인, 면담, 조사하거나
나”로, “조사 및”을
“사실관계 확인, 면
담, 조사 및”으로 한
다.

제23조제1항 중 “수
사과정”을 “수사과
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
를 말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과정”을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
기 전인 경우를 말
한다)”으로, “절차”
를 “절차(검사의 경
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 경우를 말한다)”
로 한다.

<신 설>

제24조제2항 중 “때
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
기 전인 때를 말한
다)에는”으로, “수사
에”를 “수사 및 처
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
자를 조사할”을 “피
해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 면담 또
는 조사할”로 한다.

㉔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
의 부분 중 “수사기
관등”을 “수사기관
등과 공소청(광역공
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

<삭 제>

<신 설>

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경우”를 “경우(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㉞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

㉞ (개정안 제76항과 같음)

<신 설>

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㉞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삭 제>

<신 설>

㉟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삭 제>

<신 설>

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삭 제>

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 수사처, 경찰”을 “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

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법

죄수사청수사

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광역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신 설>

⑧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개정안 제80항과 같음)

<신 설>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

<삭 제>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

청, 경찰 등 수

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

소청, 지방공소

청 및 지방공소

청 지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

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

소청의 경우에

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인 경

우를 말한다)인

경우

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신 설>

중 징 계 의 결 이

요구 중인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
청(광역공소청, 지
방공소청 및 지방공
소청 지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
기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
각 “공소청 또는 수
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
총장 및 중대범죄수
사청장”으로, “자료”
를 “자료(공소제기

<삭 제>

<신 설>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
한다)”로 한다.

㉔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사,”를 “수사 및 처
분,”으로, “검찰총
장”을 “검찰총장, 중
대범죄수사청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검찰총장,”
을 “검찰총장, 중대
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신 설>

㉕ 국가정보원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각
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

<56>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사,”를 “수사 및 공
소제기 등 처분,”으
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
수사청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
수사청장,”으로
한다.

⑰ (개정안 제84항과
같음)

<신 설>

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
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 는”으로 한다.

<신 설>

㉮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⑱ (개정안 제85항과 같음)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공소청의 경우
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 경우를 말한다)
이거나”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충경(자치충경을
포함한다)”을 “중대
범죄수사청장 및 4
급 이상의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 충경
(자치충경을 포함한
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
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
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까지를 말한다)이거
나”로 한다.

⑩ (개정안 제87항
과 같음)

는 군무원의 경우에
는 군수사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
사(檢事) 또는 군검
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
9항 본문 중 “검사
나 군검사의 조사”
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
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
관을 말한다)에게”
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를 다음과 같이 신

<신 설>

설하며, 같은 항 제1
0호 본문 중 “제3호
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
지, 제7호의2”로 하
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
2·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

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

청수사관

㉘ 국가공무원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 제6
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
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㉙ 국가공무원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 제6
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
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
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
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을 “감사원, 공
소청과 중대범죄수
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
로, ““조사 및 수사
기관””을 ““조사및
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
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
다.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까지를 말
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
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을 “감사원, 공
소청과 중대범죄수
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
로, ““조사 및 수사
기관”을 ““조사및수
사기관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
3호 중 “조사 및 수
사기관”을 “조사및
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까지를 말
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
찰·경찰”을 “공소

제8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

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

<신 설>

찰”을 “감사원, 공소
청 또는 중대범죄수
사청·경찰”로, “자
료”를 “자료(공소제
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
은 항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하
다)”로 한다.

㉘ 공직선거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9조제10항 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로 한다.

제147조제9항 중

사청·경찰”로, “자
료”를 “자료(공소제
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
은 항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하
다)”로 한다.

<삭 제>

“검찰사무·마약수
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218조의33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를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
4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는 사법경찰
관은”으로, “준용한
다”를 “준용하고, 검
사는 같은 법 제245
조의13을 준용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및 제7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을 각각 “사법
경찰관”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223조제4항 중
“관할고등검찰청검
사장”을 “관할 광역
공소청장”으로 한
다.

㉑ 지방공기업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
의 부분 중 “때에
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
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
죄수사청·경찰”로
한다.

㉒ 지방공무원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

<삭 제>

㉓ 지방공무원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

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
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
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
찰”을 “감사원, 공소
청과 중대범죄수사
청·경찰”로, “수사
기관”을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
사및수사기관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3호 중 “조사

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
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
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기 전까지를 말
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
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을 “감사원, 공
소청과 중대범죄수
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
로, ““조사 및 수사
기관””을 ““조사및
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조사 및

및 수사기관”을 “조사 및 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수사기관”을 “조사 및 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

를 결정한 때를 말
한다)에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
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
원 또는 검찰·경
찰”을 “감사원, 공소
청 또는 중대범죄수
사청·경찰”로, “자
료”를 “자료(공소제
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
(같은 항에 따른 공
소제기 여부 결정에

한다)에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
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
원 또는 검찰·경
찰”을 “감사원, 공소
청 또는 중대범죄수
사청·경찰”로, “자
료”를 “자료(공소제
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
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
(같은 항에 따른 공
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

<신 설>

대한 통보를 포함한
다)를”로 한다.

㉓ 지방세기본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교
정시설 또는 국가경
찰관서”를 “교정시
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
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을 “교정시설의 장
이나 경찰서 등 수
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
청 검사장”을 “지방
공소청장”으로 한
다.

제125조제1항 및 제
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다)를”로 한다.

<삭 제>

<신 설>

㉓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
의 부분 중 “때에
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
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
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신 설>

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8

<삭 제>

<삭 제>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단서 중 “제5조제1항”을 “사법경찰관은 제5조제1항”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연장을 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를 “사
법경찰관이 제6항
단서”로, “청구하는”
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7항 단서”를 “제1
항 및 제6항 단서”
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제6조제2항, 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제6조제1
항, 제3항부터 제5
항까지 및 제8항”으
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제6조
제1항 및 제4항”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
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
으로,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여야”를
“법원의 허가를 받
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
지 중 “검사, 사법경
찰관”을 각각 “사법
경찰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
치의 집행 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을 “申請한 司法警
察官”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검

찰송치”를 “공소청
송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을 “사법경찰
관”으로, “관할지방
검찰청검사장”을
“관할 지방공소청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
법경찰관”으로 한
다.

①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
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
소청 소속 검사에
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

를 처리하는 검사
로부터 공소를 제
기하거나 제기하
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
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검
찰송치”를 “공소청
송치”로 한다.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서울중앙
지방법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을 송

부한 사건에 관하
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
를 제기하거나 제
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
정, 참고인중지결
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
지를 각각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
의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나 제2항을 “사법
경찰관은 제1항”으
로, “제4항을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
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
항을 “사법경찰관
은 제4항”으로 한
다.

제13조의 제목 “(범
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의 절차)”를 “(범죄
수사 등을 위한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
공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을 “사
법경찰관은 수사를
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
0항까지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전의 제3항) 본
문 중 “제1항 및 제
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
항)부터 제7항(중전
의 제6항)까지 중
“제3항”을 각각 “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
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
전의 제9항) 중 “범
죄수사를”을 “범죄
수사 등을”로, “제7

항 및 제8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③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를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소 제기·검찰송치”를 “공소제기·공소청송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법공소

	<u>청”으로 하고, 같은</u> <u>항 제2호 각 목 외</u> <u>의 부분 본문 및 단</u> <u>서 중 “제6조제8항”</u> <u>을 각각 “제6조제7</u> <u>항”으로 하며, 같은</u> <u>호 가목 중 “서울중</u> <u>앙 지방 검찰청”을</u> <u>“서울중앙지방공소</u> <u>청”으로 하고, 같은</u> <u>항 제3호 중 “제6조</u> <u>제8항”을 “제6조제7</u> <u>항”으로 하며, 같은</u> <u>조 제3항 본문 중</u> <u>“지방검찰청 검사</u> <u>장”을 “지방공소청</u> <u>장”으로 한다.</u> <u>제13조의4제3항 중</u> <u>“제13조제4항 및 제</u> <u>5항”을 “제13조제5</u> <u>항 및 제6항”으로</u> <u>한다.</u> <u>제15조의3 중 “제13</u> <u>조제7항”을 “제13조</u> <u>제8항”으로 한다.</u>	
<u><신 설></u>	<u>제16조(다른 법률의</u>	<u>제16조(다른 법률의</u>

	<u>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u> <u>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u> <u>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u> <u>3. 「고위공직자법</u>	<u>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u> <u>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u> <u>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u>
--	--	--

	<u>죄수사처 설치 및</u> <u>운영에 관한 법</u> <u>률」의 고위공직</u> <u>자 범 죄 수 사 처 의</u> <u>처장, 차장 및 수</u> <u>사처검사</u> 4. 「 <u>군사법원법</u> 」 <u>의 군검사</u>	<u>에도 불구하고 부칙</u> <u>제12조제1항에 따라</u> <u>검사가 수사할 수</u> <u>있는 사건에 관하여</u> <u>는 종전의 규정에</u> <u>따른다.</u>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4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서영교 · 이성윤 · 김동아
박지원 · 김승원 · 이해식
박균택 · 김한규 · 손 솔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채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찰청’ 정비 대상 용어를 그 의미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28개 법률의 개정부분은 삭제하여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군사법원법」의 재정신청 관할 변경에 따라 기존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사항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신청 관할을 수정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적용례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보완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의12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61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제19항·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

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

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제14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제16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항으로, 같은 조 제9항을 제20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26항으로, 같은 조 제11항을 제27항으로, 같은 조 제12항을 제28항으로, 같은 조 제13항을 제29항으로, 같은 조 제14항을 제36항으로, 같은 조 제15항을 제40항으로, 같은 조 제16항을 제42항으로, 같은 조 제17항을 제45항으로, 같은 조 제18항을 제47항으로, 같은 조 제19항을 제49항으로, 같은 조 제20항을 제51항으로, 같은 조 제21항을 제54항으로, 같은 조 제22항을 제55항으로, 같은 조 제23항을 제58항으로, 같은 조 제24항을 제59항으로, 같은 조 제25항을 제60항으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

5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및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6항(중전의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제41항, 제43항, 제44항 및 제4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7항(중전의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9항(중전의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1항(중전의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2항, 제53항, 제56항 및 제5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0항(중전의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⑰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⑱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②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③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
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수사 자료”를 “조사·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
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㉔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
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㉖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
장”을 “공소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중대범죄수사청차장·경찰청차
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
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㉒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항

㉓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

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㉔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㉟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㉔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④③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④④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④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④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⑧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④⑨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

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 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 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공판 과정”을 “수사·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① ~ ⑤ (생략)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u>제4항</u> 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제3항 및 제4항</u> ----- ----- ----- -----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제1조(시행일) ----- ----- ----- ----- -. 1. ----- <u>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61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제19항·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u>

<u>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2.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1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u> ----- 2. 3. (개정안과 같음)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
---	---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② (생략)

<신설>

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④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신 설>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신 설>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⑤ (생략)

<신설>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
나”로 한다.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
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
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
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
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
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
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
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
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

<신 설>

<신 설>

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

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

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 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 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신설>

수사청·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 (현행 제6항과 같음)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⑯ (현행 제7항과 같음)

⑰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

<신 설>

⑧ (생략)

⑨ (생략)

<신 설>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⑮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⑯ (현행 제8항과 같음)

⑰ (현행 제9항과 같음)

⑱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③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

<신 설>

<신 설>

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수사 자료”를 “조사·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②4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②5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⑩ (생략)

⑪ (생략)

⑫ (생략)

⑬ (생략)

<신설>

<신설>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6 (현행 제10항과 같음)

②7 (현행 제11항과 같음)

②8 (현행 제12항과 같음)

②9 (현행 제13항과 같음)

③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중대범죄수사청차장·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③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㉔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 설>

<신 설>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
지를 말한다)인 사항

㉓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
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
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
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
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㉔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
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

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
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
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
· 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
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
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
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
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
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
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
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
청 ·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 · 수사기
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 · 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신 설>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㊸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

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광역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신 설>

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⑮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⑯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

<신 설>

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㉔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

· 경찰”로, “증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증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증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신 설>

⑮ (생 략)

<신 설>

⑯ (생 략)

<신 설>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㉞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㉟ (현행 제15항과 같음)

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㊲ (현행 제16항과 같음)

㊳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⑪ (생 략)

<신 설>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④④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17항과 같음)

④⑥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

<신 설>

①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 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④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신 설>

⑤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

⑳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신 설>

한다)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한다.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항제1호 중 “수사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

<신 설>

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
4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
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
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
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
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
소청장”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
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
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㉑ (생략)

㉒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4> (현행 제21항과 같음)

<55> (현행 제22항과 같음)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공판 과정”을 “수사·공판 과정

㉓ (생략)

㉔ (생략)

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 (현행 제23항과 같음)

<59> (현행 제24항과 같음)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신 설>

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

	<u>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u> <u>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	--

